

#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빅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심사 보고

의안 번호	3154
----------	------

2025년 12월 18일  
교통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자 : 윤영희 의원 외 15명

나. 제안일자 : 2025년 9월 16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라. 상정일자

-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2025년 12월 18일 상정 ·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윤영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청소년과 청년층 사이에서 ‘픽시(Fixed Gear) 자전거’가 새로운 유행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픽시 자전거는 단순한 구조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나, 앞·뒤 브레이크가 모두 없거나 일부만 장착된 채 운행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도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 이처럼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무분별한 이용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와 다른 도로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만으로는 픽시 자전거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청소년 및 초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이에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가 픽시 자전거의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제동장치 부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안전교육과 홍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건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 나. 주요골자

-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안전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핵시 자전거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 핵시 자전거 이용안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추진을 규정함(안 제7조)
- 핵시 자전거 이용 및 안전사고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8조)
-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9조)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10. 28. ~ 2025. 11. 01.

- 제출의견 : 없음

####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sup>1)</sup>

- 제출의견 : 원안 가결

- 조례 제정을 통한 픽시자전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이용자  
인식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함

---

1)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보행자전거과-17379호(2025. 12. 5.)

##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 가. 개요

- 동 조례안은 핵시 자전거<sup>2)</sup>가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동장치 없는 핵시 자전거’에 대한 정의, 시장 등의 책무, 운전자 준수사항, 관련 교육 및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여 핵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 제정 배경 및 필요성 등

- 현재 청소년들 사이에서 제동장치(브레이크)를 제거한 핵시 자전거가 유행하고 있으나 제동장치가 없는 경우 제동거리가 최대 13.5배 길어져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sup>3)</sup> 올해 7월경 브레이크 없는 핵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 및 관리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됨
- ‘제동장치 없는 핵시 자전거’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안전관리 등에서 한계가 있었으나 ’25년 8월 경찰청

2) 핵시 자전거((fixed-gear bike), 일명 핵시(fixie) 출처: 나무위키

- 경륜 자전거에서 유래된 포장도로용 자전거의 한 갈래로 기어가 고정되어 있는 자전거

3) ‘제동장치를 제거한 핵시 자전거의 위험성’ 서울 자전거 따릉이 블로그

-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13.5배 길어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음

- 특히 내리막이나 고속주행시 속도를 줄이기가 어려워 순간적인 대처 한계

에서 제동장치 없는 핵시 자전거를 「도로교통법」 상 “차”로 유권해석을 하고,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의 계도 및 단속 강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동 제정조례안은 핵시 자전거와 관련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제동장치 부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안전교육과 홍보,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건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선도적으로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임

## ■ 조례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동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는 것으로 최근 청소년들의 제동장치 없는 핵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한 핵시 자전거 이용환경을 증진하기 위한 동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 조례 용어 정의(안 제2조)

- 동 조례안 제2조는 ‘자전거’ 및 ‘제동장치 없는 핵시자전거’를 정의하는 것으로 ‘자전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sup>4)</sup> 규정을 준용하여 정의하는 것은 별도 문제가 없음

---

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 한편 픽시 자전거(Fixed Gear bicycle)는 구동 원리상 기어가 고정된<sup>5)</sup> 자전거로 관련 법상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부착되어야 함에도 최근 브레이크를 임의로 제거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또는 브레이크가 없는 경기용 픽시 자전거가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면서 관련 안전사고<sup>6)</sup>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단속과 관리가 절실한 상황임
- 하지만 픽시 자전거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을 제재할 근거가 모호했으나 경찰청에서 법률 검토<sup>7)</sup>를 통해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가목<sup>8)</sup>에 따른 ‘차’에 해당하며, ‘차’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및 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sup>9)</sup>을 근거로 제동

갖춘 것을 말한다.

- 5) 고정기어(Fixed Gear) : 페달이 항상 뒷바퀴와 함께 회전할 수 있도록 프리휠 메커니즘이 없는 구동 렐을 갖춘 자전거의 한 종류
- 6) 브레이크 없는 질주에 중학생 사망… ‘픽시 자전거’ 뭐길래 조선일보(2025.08.18.)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주의보…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 4배 mbn 뉴스(2025.09.05.)
- 7) ‘개학기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안전운전 의무위반 계도·단속 강화’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안전과 (2025. 8. 18.(월))
  - 법률검토 결과 픽시자전거는 차에 해당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하여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향후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 이하 생략 -
- 8)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는 제외한다.
- 9)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장치를 제거한 핵시 자전거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을 시행<sup>10)</sup>한 바 있음

- 동 조례안은 경찰청의 법적 검토 사례 등을 고려하여 제동장치를 제거한 핵시 자전거를 새로이 정의함으로써 핵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의 법적 검토는 제동장치 없는 핵시자전거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 적용<sup>11)</sup>이 필요하여 단속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핵시 자전거와 관련된 정의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법적 정의나 규정이 신설 및 개정<sup>12)</sup>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 할 것임

## ■ 시장 등의 책무(안 제3조·제4조)

10) ‘핵시 위험’ 안 듣는 아이들 “멋있어 타요”… 아찔한 질주 여전 세계일보(2025.09.17.)

- 경찰청은 핵시 자전거 집중 계도가 이뤄진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제동 장치가 없는 자전거 139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 이하 생략 -

11) ‘개학기 제동장치 없는 ‘핵시자전거’ 안전운전 의무위반 계도·단속 강화’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안전과 (2025. 8. 18.(월))

-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의 이용은 단속하기 어려워 입법으로 이를 개선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고 통행장해를 초래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최근 서울에서는 중학생이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제동하지 못하여 에어컨 실외기를 충격하고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하여 현행법률상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12) ‘자전거 안전 이용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보행자전거과-11655(2025. 8. 14.)

① 자전거 제동장치 제거 행위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 2(교통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등이 갖추어야 할 구조) 조문에 “제동장치가 있어야 한다” 추가 등

② 공동 위험행위 금지 대상에 자전거 포함

▶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제1항 중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자동차 등 및 자전거”로 개정

- 동 조례안 제3조는 핵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여건을 위해 시장이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이용자인 시민은 핵시 자전거에 제동장치를 장착하는 등 안전 의무를 준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임
- 동 조례안 제4조는 핵시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3조·제48조·제49조 등<sup>13)</sup>에서 규정하는 차마의 통행, 안전운행 등의 사항을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시 자전거에 대한 이용안전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핵시 자전거 이용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6조)

- 동 조례안 제6조는 시장이 핵시 자전거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제동장치 부착 독려 등을 담은 핵시 자전거 이용안전 계획을 「자전

---

13)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털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 가.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 이하 생략-

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sup>14)</sup>에 따른 서울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임

서울시는 관련 법 및 현행 조례 제5조<sup>15)</sup>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포함하는 것은 가능해 보임

- 다만, 현재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은 '27년부터 다시 수립할 예정<sup>16)</sup>인 만큼 계획 수립 이전에 꼭시 자전거 이용안전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구성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 할 것임

## ■ 교육추진(안 제7조)

- 동 조례안 제7조는 시장이 꼭시 자전거 안전 이용을 위해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및 교통법규 등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 최근 서울시는 '꼭시자전거 안전이용 및 리튬배터리 안전관리 캠페인 추진계획'<sup>17)</sup>에 따라 꼭시 자전거 안전이용에 대한 캠페인을 통

1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22.>

15)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주기) 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6) [2022년 ~ 2026년] '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계획' 자전거정책과-20355(2022.3.31.)

해 대외적인 교육<sup>18)</sup>을 강화한 바 있고, 청소년이 핵시 자전거 주 이용층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안전문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제9조)

- 동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는 시장이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핵시 자전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중앙정부, 경찰청, 자치구 등과 전반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핵시 자전거에 대한 이용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의 제정 목적에 맞는 조치로 이해됨

---

17) ‘핵시자전거 안전이용 및 리튬배터리 안전관리 캠페인 추진계획’ 보행자전거과-12890(2025. 9. 10.)  
- 핵시자전거 이용시 안전장비 착용 생활화 및 올바른 이용습관 유도

18) ‘도로 위 흉기’ 핵시 자전거... 서울시, 사고 방지 총력 스카이데일리(2025.9.14.)  
-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교육에 핵시 자전거 관련 내용을 추가했

다. 핵시 자전거의 구조·특징, 자전거도로 통행 불가 규정과 위험성, 사고 시 미보상 등을 안내하고 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윤영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154
----------	------

발의 년 월 일: 2025년 09월 16일  
발의자: 윤영희 의원(1명)  
찬성자: 경기문, 곽향기, 김성준,  
김지향, 문성호, 박석,  
송도호, 윤기섭, 이경숙,  
이상욱, 이새날, 이숙자,  
이원형, 이종태, 황철규  
의원(15명)

## 1. 제안이유

- 최근 청소년과 청년층 사이에서 ‘픽시(Fixed Gear) 자전거’가 새로운 유행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픽시 자전거는 단순한 구조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나, 앞·뒤 브레이크가 모두 없거나 일부만 장착된 채 운행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도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 이처럼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무분별한 이용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와 다른 도로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만으로는 픽시 자전거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청소년 및 초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이에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가 픽시 자전거의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제동장치 부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안전교육과 홍보,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건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 2. 주요내용

- 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안전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픽시 자전거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 마.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계획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바.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추진을 규정함(안 제7조)
- 사. 픽시 자전거 이용 및 안전사고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8조)
- 아.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9조)
- 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지방자치법」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핵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핵시 자전거가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핵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제동장치 없는 핵시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의 차 중 자전거등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것 중에서 앞과 뒤 브레이크 모두 또는 일부가 없이 사람의 동력(動力)으로 운전되는 것으로 고정기어 구조의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핵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핵시 자전거 안전한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핵시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 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동장치 을 장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전자의 준수사항) 핵시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거나 따르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른 차마의 통행방법 이행
2. 「도로교통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사항 이행
3. 핵시자전거 안전운행을 위해 제동장치(앞·뒤 브레이크 모두)를 부착하여 자전

## 거로 운행 노력

제5조(적용범위) 꾹시 자전거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꽉시 자전거 이용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시민의 꾹시 자전거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꾹시 자전거 이용안전 계획을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1. 꾹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한 제동장치 부착 독려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
2. 꾹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한 홍보 및 안전교육 방안
3. 그 밖에 꾹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교육추진 등) ① 시장은 꾹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1. 꾹시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꾹시 자전거와 자전거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꾹시 자전거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안전을 위한 꾹시 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 등의 꾹시 자전거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꾹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청 등 관련기관 협조를 통해 꾹시 자전거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꾹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찰청,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 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6조(튕시 자전거 이용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7조(교육추진 등)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소관부서(교통실 보행자전거과)에서 관련 사업을 기추진 중이므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제8조(실태조사) 또한 임의 규정으로 국가기관(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기준 통계 및 현황자료로 갈음할 수 있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참고자료로 '튕시자전거 안전이용 관련 캠페인 추진계획'을 첨부함[붙임]

###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선희  
추계세제팀장 김중현  
추계분석관 이설화  
☎ 02-2180-7952  
e-mail : sseol789@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붙임) 퍽시자전거 안전이용 및 리튬배터리 안전관리 캠페인 추진계획(보행자전거과-12890호, '25. 9. 10.)

## 퍽시자전거 안전이용 및 리튬 배터리 안전관리 캠페인 추진계획

보행자전거과장: 송수성 ☎ 2133-2410 보행자전거정책팀장: 장일진 ☎ 2421 담당: 김은선 ☎ 2422

전기 이동장치 배터리 충전 중 화재 발생과 퍽시자전거 이용에 따른 인명피해 사고를 계기로 시민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함

### □ 추진방향

- 퍽시자전거 이용시 안전장비 착용 생활화 및 올바른 이용습관 유도
- 리튬 배터리 충전 및 관리 요령 안내를 통한 화재·감전 사고 예방
- 서울시, 자치구, 시민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시민 밀착 캠페인 전개

### □ 추진개요

- 기 간 : 2025년 9월 ~ 10월 중
- 장 소 : 관내 중·고등학교, 학원가, 지하철 역사주변, 한강 및 체육공원 등
- 참 가 : 시, 자치구, 학교, 자전거 민간단체

\*\*\*\*\*  
\*\*\*\*\*  
\*\*\*\*\*

### □ 캠페인 내용

#### ○ 퍽시자전거 이용자제

- 제동장치가 없는 퍽시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불가(자전거 아님 강조)
- 사고발생시 자전거보험 등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
- 퍽시자전거 운행 시 브레이크(앞바퀴·뒷바퀴) 장착 의무화
- 도로교통법 및 경찰청 단속강화(개조불가 등) 사항 안내

※ 도로교통법 제48조1항(안전운전의무) 위반시 단속 및 미성년자는 보호자 통보



<픽시자전거 리플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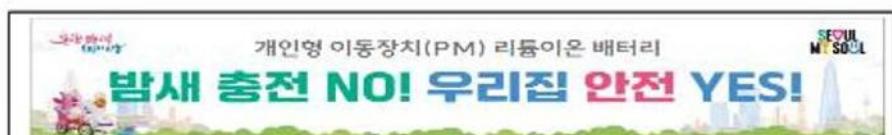
<픽시자전거 협수막(안)>

#### ○ PM(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리튬배터리 안전관리

- 올바른 충전방법 및 배터리 관리요령 안내
-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사고 사례 및 대응법 교육(안전교육시)
- 충전 전 점검, 화재 발생시 대피 요령 등 안전수칙 안내



<리튬 배터리 안전관리 리플렛>



<리튬 배터리 안전관리 협수막(안)>

## □ 세부 추진계획

### 서울시 추진

#### ○ 시범추진(2개교) : \*\*\*\*

- 일 시 : \*\*\*\*\*

\*\*\*\*\*

\*\*\*\*\*

\*\*\*\*\*

- 방 법 : 시, 학교 합동으로 학생 등교시간에 광시자전거 및 PM 리튬 배터리  
관련 리플렛 배부 등 현장캠페인

\*\*\*\*\*

- \*\*\*\*\*

- 진행일정

시 간	추 진 내 용
*****	*****
*****	*****
*****	*****
*****	*****
*****	*****

- 준비물 : 리플렛 2종 2,000매(광시자전거 1,000, PM배터리 1,000), 현수막 2개

#### ○ 본격추진 : 서울시내 종고등학교, 주요 학원가, 지하철역사 주변, 한강공원 등 자전거 이용량이 많은 곳을 선정하여 주 2회(1개조 6명)

- 일 시 : '25. 9.19.(금) ~ 10.31.(금) (5주간)

- 참여인력 : 보행자전거과 전직원, 경찰청·자치구·학교 교직원 참여요청  
(1개조당 6명 × 10회 = 60명)

- 대상 현황 : \*\*\*\*\*

추진일정 (예정)	학 교 명	캠페인 시간대	참 석 인 원	
			조 장	조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 자전거 안전교육 병행

- 학교로 찾아가는 중고등학교 안전교육(\*\*\*\*\*) 및 시민대상 안전교육시 리플렛 및 홍보물 배부 등 캠페인 실시

### 자치구 및 민간단체 추진

구 분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사전준비	9월초	<input type="radio"/> 대상지 선정 등 일정협의 <input type="radio"/> 리플렛, 피켓, 현수막 등 인쇄를 제작
캠페인 실시	9월 ~ 10월	<input type="radio"/> 자 치 구 : 등교시간에 학교앞 등 캠페인 실시 <input type="radio"/> 민간단체 : 자전거 안전지킴이단 활동과 연계하여 캠페인 실시
결과보고	10월	<input type="radio"/> 결과보고서 제출 (양식 불일 친고)

## 행정사항

- 자치구 및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 캠페인 실시 협조요청
- 대상학교 및 캠페인 장소 선정과 추진방법 협의
- 직원 근무명령 및 조기 현장출근 인정 처리

붙임 1. 캠페인 추진결과 보고서 (양식) 1부.

2. 픽시자전거 리플렛 1부.

3. 화재예방 전단지 1부. 끝.